

제5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6. 12. 20.(화) 15:00 ~ 18:00

2. 장 소 : 율곡관 제1회의실

3. 참석 : 이순일 의장, 노재성 부의장, 김상배 평의원, 문우진 평의원, 이동렬 평의원, 임문채 평의원, 이준석 평의원, 오귀석 평의원, 최중원 평의원, 김준형 평의원, 이삼구 평의원 (불참 : 구형건 평의원, 류동관 평의원)

4. 의안

○ 보고사항

- 학칙 제49조(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) 개정(안) 서면결의 결과

○ 심의사항

- 학칙 개정 (안)

○ 자문사항

- 2016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 [교비회계 및 병원회계]

5. 주요 회의결과

가. 보고사항

- 제58차 대학평의원회(2016.7.21.)에서 학칙 제49조(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) 개정(안)이 부결되어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 통과함
- 서면결의 일자 : 2016. 8. 17.(수)
- 서면결의 결과 : 평의원 13명 중 11명 찬성으로 심의 의결

나. 심의사항 - 학칙 개정(안)

○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.

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다

- 아주서비스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아주상담지원센터로 통합하는 수정안 관련: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

<간서명란>

의장



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스포츠레저학과 관련: 체육특기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는 동시에,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
- 신설 학과인 융합시스템공학과 관련: 입시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. 신설 학과의 첫 해 운영 결과가 학과의 안착에 매우 중요하므로 입학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
- 트랙 신설 관련: 학생설계트랙/도전트랙의 경우 졸업사정을 별도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, 주전공 및 복수/부전공, 트랙에 대하여 별도로 졸업사정을 한다는 교무팀의 설명이 있었음. 학생설계트랙/도전트랙의 세부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함
- 교육부의 법과대학 폐지 시기 정정과 관련한 부칙 개정안 관련: 폐지 이후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법학사 졸업이 가능한지 질의한 바, 가능함을 확인함

[주요 개정내용]

- 제4조(기구) 별표1 통번역연구소 신설,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
- 제8조(대학원) 임상치의학대학원 전공 폐지 및 신설(통합치의학)
- 제21조(학생정원) 일반대학원/전문대학원 정원 동결, 특수대학원 정원 변경(임상치의학대학원 5명↑,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5명↓), 학사과정 정원 동결
- 제43조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및 트랙) 전공특화트랙, 학생설계트랙, 도전트랙 신설
- 부칙 법과대학 폐지 연기(2017.3 → 2018.3)

자세한 사항은 2016년 13차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

다. 자문사항

○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

1) 보고사항

- 기획처장이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설명함

<간서명 란>

의 장



2) 자문사항

- 교비회계 규모(자금수입 또는 자금지출 총계)가 적절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남(2016 1차 추경 대비 111.9억 감소)
-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6년 1차 추경 대비 19.3억 감소. 특히, 대학원 등록금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바 대책 마련이 요구됨
- 기부금 수입도 2016년 본예산 및 1차 추경(60.0억 원) 대비 2차 추경에는 54.6억 원으로 축소됨. 결산까지 100%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
-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교비 대체 규모는 22.2억 원에 달함
 - 이는 법인이 본교 법정부담금의 58.1%(30.8억)만 전입해 발생한 문제
 - 법인이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도 법정부담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. 대학본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함
 - 비정규직 직원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법인부담금의 교비 대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. 이 3항목의 교비 대납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
- 부속병원이 본교 지원을 위해 의과대학 건물(송재관) 관련 제비용 9.26억 원을 전출하였으나, 이에 상응하는 경상비전입금 수입이 교비회계에 실현되지 않았음
- 2차 추경에도 소송당사자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으로 되어 있는 소송들의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 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됨. 이 문제를 검토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
- ‘도서관 리모델링’ 관련 기금인출수입 감소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과임. 동 사업은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선택까지 포함하여 원점 재검토가 필요함.
- 법인이 의대에 전입한 경상비 26.4억 원에는 장례식장 수익 배분 22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. 대학본부가 장례식장의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법정 부담금 100% 전입 및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
- 1차 추경 시 자문한 문제들(법정전입금 및 소송비용의 교비 대납, 송재관 관련 경상비전입금 수입 누락)이 2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임

<간서명 란>

의 장

○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

1) 보고사항

- 기획조정실장이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설명함

2) 자문사항

- 1차 추경 시 자문한 것과 같이 중요 지표들에 대해 재정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달성을 정리·공개하는 것이 필요함
-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이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나, 2차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다시 0.87%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 -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과 관련해 예측 가능 수준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
 - 주요 대학부속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이 평균 33.4%로 대동소이한 것을 고려할 때, 본교 병원의 재료비율에는 개선 여지 있음
 - 본교 병원의 의료재료 공급이 ^(주)대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을 낮추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
- 부속병원전출금 관련
 - ‘광교사업관련 전출금’은 책정 근거가 불명확함. 1차 추경 시 자문한 것과 같이 광교사업과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변제 및 법인자금 투입에 따른 상실이자소득 대체 등 제 항목을 모두 포함한 ‘연차별 광교사업관련 자금 전출 계획’을 수립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
 - 법인이 의대에 전입한 64.7억 원 중 경상비전입금 26.4억 원에는 이전 장례식장 수입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따른 22.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청취함
 - 장례식장의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, 수익 증가에 따른 전입금 증가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교사업 지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
- 부속병원의 예·결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 부서 및 인력들은 병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

<간서명 란>

의장

2016. 12. 20.(화)
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

의장	이순일	(서명)
부의장	노재성	(서명) 노
평의원	김상배	(서명) 김
평의원	구형진	(서명) 구
평의원	문우진	(서명) 문
평의원	이동렬	(서명) 이
평의원	임문채	(서명) 임
평의원	류동관	(서명) 류
평의원	이준석	(서명) 이
평의원	오귀석	(서명) 오
평의원	최중원	(서명) 최
평의원	김준형	(서명) 김
평의원	이삼구	(서명) 이
간사	김종현	(서명) 김